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3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DO NOT CALL 법 위반 혐의로 HILTON GRAND VACATIONS COMPANY, LLC를 상대로 벌금 부과 사실을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판매 전화를 한 Hilton Grand Vacations Company, LLC가 뉴욕주 Do Not Call 법을 위반한 것을 두고 뉴욕주와 Hilton Grand Vacations Company, LLC 간의 분쟁 합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화들은 Do Not Call 등록부에 유효하게 등재된 전화번호 주인들에게 걸렸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250,500달러를 분쟁 해결 비용으로 지불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뉴욕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전화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뉴욕주는 홍보성 전화 수신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주민에게는 이처럼 귀찮은 메시지를 상대하지 않도록 하는 Do Not Call 법을 만들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해결방식은 이 법을 위반하는 업체들도 이러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 행정부가 뉴욕주민들을 이처럼 부당한 행위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민들은 Do Not Call 등록부에 오르게 되면 텔레마케터의 연락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Rossana Rosado 뉴욕주 국무장관 대리가 말했습니다. “이 해결방식은 소비자들을 원치 않는 판매 전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계 관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문제에 협조해주신 Hilton Grand Vacation LLC께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 Do Not Call 법은 2001년에 발효되어 소비자들이 집전화와 개인 이동전화번호를 중앙등록부에 기록하여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 건수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Do Not Call 법은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2003년, 연방무역위원회와 연방통신위원회는 국립 Do Not Call 프로그램과 등록부 마련에 협력하였습니다.

이 위반에는 334통의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133명의 사람에게 걸었던 점이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국립 Do Not Call 등록부에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Hilton사는 관련 부처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으나 위반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그들은 또한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다음 상황의 소비자에게만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전화번호가 국립 Do Not Call 등록부에 유효하게 등재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 이 소비자가 이 회사 또는 계열사에게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전화번호가 국립 Do Not Call 등록부에 유효하게 등재되어 있지만 “Hilton HHonors” 회원인 소비자. 이 소비자가 Hilton 및/또는 계열사에게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전화번호가 국립 Do Not Call 등록부에 유효하게 등재되어 있지만 Hilton과 직접적으로 사업 관계를 맺은 소비자. 이 소비자가 Hilton 및/또는 계열사에게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전화번호가 국립 Do Not Call 등록부에 유효하게 등재되어 있지만 Hilton과 직접적으로 사업 관계를 맺은 소비자. 이 소비자가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Hilton 또는 그 계열사의 이전 업체 관계를 바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할 목적으로 Hilton Worldwide 브랜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있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Hilton 및/또는 계열사에게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1) 뉴욕 일반사업법(General Business Law) 및/또는 기타 해당 법령 또는 법규로 달리 이런 전화가 금지되지 않은 경우; 2) Hilton 및/또는 계열사에게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 전화는 어떤 해당 법으로도 달리 금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o Not Call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뉴욕주 국무부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http://www.dos.ny.gov/consumerprotection/>)를 방문하십시오.

소비자들은 연방무역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https://complaints.donotcall.gov/complaint/complaintcheck.aspx>).

어떤 업체에 대한 민원 사항이 있을 경우 뉴욕주 국무부 소비자보호국 핫라인 (800) 697-1220으로 전화하십시오. 소비자지원 핫라인은 연방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금, 8:30am - 4:30pm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소셜미디어에서 소비자보호국을 팔로우하십시오:

- 트위터: [@NYSConsumer](https://twitter.com/NYSConsume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nysconsumer](https://www.facebook.com/nysconsumer)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